

	사규명	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	분 류	윤 리
			사규번호	윤리-B-03
			기안부서	정도경영실
			최초제정	2013.07.01
			최종개정	2020.08.06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, 이 지침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자율준수"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공정거래 관련 법규”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규를 말한다
- ③ “CP”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으로,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,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.
- ④ “자율준수관리자”란 CP의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- ⑤ “CP 주관부서”는 CP 운영을 주관하여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⑥ “자율준수협의회”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,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.
- ⑦ “담당본부”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, 감독하는 본부를 말한다

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 3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)

- ① 회사는 CP 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의 의결을 통하여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, 선임 사실은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 의결을 통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, 해임 사실은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조 제 2 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 의결로 새로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)

-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, 자율준수관리자가 본조 제 3 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,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,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.
-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본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⑥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,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제 5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)

자율준수관리자는 CP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CP 의 계획수립 및 운영
2. CP 의 운영실태 점검 및 시정요구 등 후속조치
3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
4. CP 활동 및 사안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보고
5.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정거래 관련 정부기관에 협조 및 지원
6. 본 지침의 제·개정안 작성 및 관리
7. CP 활동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
8. 기타 CP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
제 6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)

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 권한
2. CP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 권한
3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
4.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조치 요구 권한

제 2 절 CP 주관부서

제 7 조 (CP 주관부서의 구성)

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CP 주관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CP 주관부서)

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주관부서를 두며 CP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
2.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보고, 시행
3.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 효과성 평가
4.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
5.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
6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
7. CP에 대한 문서관리체계 구축
8. 자율준수편람의 제작, 개정 및 배포
9. 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 및 감사
10. 사전업무협의체도의 시행

제 3 절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역할

제 9 조 (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선임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구성한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와 관리 및 영업본부의 그룹장 중에서 선임한다. 관리본부에서는 재무업무 담당부서와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 각 1명, 영업본부는 본부별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다.

- ③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관리 및 영업본부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해당본부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 단, 본 자율준수협약회의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④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약회의의 실무운영을 총괄한다.

제10 조 (자율준수협약회의의 운영 및 역할)

- ① 자율준수협약회의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협약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
 - 2.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권고
 - 3. 위원별 소속 본부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, 감독 및 점검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
 - 4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

제 11 조 (자율준수협약회의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)

- ① 자율준수협약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자율준수관리자 지원
 - 2.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지휘감독 하여 소속 본부의 CP 운영 총괄
 - 3. 소속 본부의 CP 교육참여 독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사전 법위반 예방
 - 4. 소속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의 발굴
-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약회의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자율준수협약회의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
 - 2. 소속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
 - 3. 소속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및 그 결과를 CP 주관부서에 통보
 - 4. 소속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 인지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로 통보

제 4 절 임직원

제 12 조 (임직원의 의무)

-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(또는 불가피한 경우 1 영업일 내)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.

제 13 조 (공정거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)

-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CP 주관부서 및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할 경우 CP 주관부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필요 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 3 장 CP 의 운영

제 1 절 자율준수의지선언

제 14 조 (선언 목적)

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 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선언 방법)

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,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 2 절 CP 의 운영

제 16 조 (CP 의 운영)

- ① CP 주관부서는 CP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CP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회사 임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임직원은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제 17 조 (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CP 주관부서를 통해 문서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수정 및 보완 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교육프로그램의 운영)

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1. E-러닝 과정을 이용한 on-line 교육
2. 각 부서별, 계층별 특성에 맞는 off-line 교육
3. 기타 외부 전문강사 초빙 등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

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, 교육 수강 후 수강현황을 각 수강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.

③ 의무 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미 이수 사유를 CP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CP 주관부서는 미 이수자 또는 CP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의 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주요 내용, 업무 수행상 필요한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하며, CP 주관부서에서 작성 및 교육을 실시한다.

⑤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회사 임직원 대상 설문 또는 VOC 를 통해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도출된 결과는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.

제 19 조 (문서의 관리)

① CP 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.

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.

③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지침에 따른다.

제 20 조 (공정거래 모니터링)

① CP 주관부서는 CP 위험성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내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
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및 감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후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신고시스템의 운영 및 신고자 보호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, 신고된 내용에 대해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CP 주관부서에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다.
- ② 신고시스템은 기명신고뿐만 아니라 익명신고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. 익명신고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,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,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공시)

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CP 운영 효과성 평가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,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CP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, 필요 시 외부전문가에게 종합평가 신청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3 절 공정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포상

제 24 조 (제재조치요구)

- ①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주관부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25 조 (제재의 원칙과 절차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제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 1.에서 정하며,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한다.
- ④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26 조 (임직원의 포상)

자율준수관리자는 CP 를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임직원에게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.

- 1. CP 점검 우수 조직
- 2.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및 실천리더

제 27 조 (기타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 정보교환,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 절차에 의거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지침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지침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별 첨

별첨 1: 공정거래법 위반 세부 제재 기준

(별첨 1)

공정거래법 위반 세부 제재 기준

1. 제재 기준

가.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

범위반 정도	제재		비고
	담당자	부서장	
상	징계	경고	- 중대 법규*를 위반한 경우 * 중대 법규: 부당한 대금결정, 부당감액, 부당위탁취소 및 변경, 부당반품, 기술탈취 등 - 동일한 위반을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
중	경고	주의	-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계약서 발급이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- 위반수준이 상, 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하	주의	주의	- 경미하거나 자진 시정이 가능한 경우 . 계약서 발급이 30일 미만 지연된 경우 . 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. 지연이자 지급 등 자진 시정이 가능한 경우 등 - 법 위반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- 경영여건 등 특별히 고려할 이유가 있는 경우 등

나. 기업집단 현황(공시) 위반 제재기준

범위반 정도	제재		비고 (공정위 과태료 부과기준)
	담당자	부서장	
상	징계	경고	- 당해 1,000 만원 이상 또는 3회 누적 1,500 만원 이상
중	경고	주의	- 당해 500~1,000 만원 미만 또는 3회 누적 1,000 ~ 1,500 만원 미만

하	경고	주의	- 당해 500 만원 미만
	주의	주의	- 경고 조치(과태료 미부과)

2. 양정 가중 및 감경사항

구분	내 용
가중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사 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 - 불성실조사 대응 및 허위진술 - 동일조사에서 동일인의 지적 건수가 다수인 경우 - 기타 고의적, 악의적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감사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가중이 필요한 경우
감경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 위반의 자발적 인정 및 반성 - 신입(전입)사원 혹은 해당업무 미숙련자의 업무 미숙 - 자율준수노력, 외부 법률상담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-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